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4. 7. 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7월 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5회(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4년 7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행정수요에 비해 협소한 신길제7동 청사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삼환아파트 기부채납부지(765.4㎡)에 동사무소,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물로 신축.
- 영·유아와 노인분들의 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양평동3가 35번지 소재 구립 양평3가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1988년 5월 1일 준공된 경량철골조의 노후된 건물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구립어린이집 등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995.6㎡)를 매입.
- 장사등에관한법령의 개정에 의해 자치단체에 납골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고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민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염가로 공급하고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 40번지 소재 대한 불교천지정사 별립산 추모공원의 납골시설을 1기당 30만원 기준으로 5,043기를 전액 시비지원금으로 매입.
- 양평동 2가 33-4번지 도로(990.1㎡)는 사유재산의 현황도로로써 소유자가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창수)

-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은 서울시의 새로운 장사행정추진계획에 의한 자치구별 납골시설 확보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인 강화군에 용산구, 구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가 권소시업을 구성해 전액 시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구민에게 저렴하게 납골당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필요한 매입시설로 생각되나 현장방문시 지적된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문제가 개선된 후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골시설 사용료 징수문제,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납골시설 안치기간 및 처리문제,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문제 등이 조례나 규칙으로 자세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사유도로 기부채납 건은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로써 소유주가 우리 구에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원하는 것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사권설정 등의 하자가 없으며 공시지가로 약 3억 5,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우리 구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은 동 시설의 주차시설 부족 및 차량 진입로 협소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그 외 3건은 원안대로 취득함.

나. 주요골자

-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은 보류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은 보류함.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9호
----------	------------

제출년월일 : 2004. 7. 5.

제출자 : 고현순위원외1인

1. 수정이유

-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은 동 시설의 주차시설 부족 및 차량 진입로 협소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그 외 3건은 원안대로 취득함.